

損害査定士 意見

콘크리트펌프카<차량번호 대전15다6841> 차량수리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기술합니다.

■ 다 음 ■

1.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서에 안전운전불이행이라 기재 합니다.
2. Hopper Ass'y가 파손된것을 입회하여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와 수리처인 에버다임에서 수리비전적서에 교환으로 청구하였고 실제 교환한 것을 입회하여 확인하고 손해액으로 인정하였고, 전적서 청구내용 중 Cylinder:delivery는 교환으로 청구되었으나 교정수리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자는 휴차료 1일 1,392,510원 × 수리기간(입고일자~출고일자) 동안의 간접손해를 요구하여 실제입출고일자를 확인하고 휴차료조건표 기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레미콘차량이 후진중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써 사고원인과 연관성을 확인하고 타당한 범위에서 객관적이고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2018. 05. 24.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손해사정사 유 상 현 (인)





사업자등록증

(면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06-86-30223

법인명(단체명) :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

대표자 : 유상헌

개업연월일 : 2004년 09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3054155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 807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 807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손해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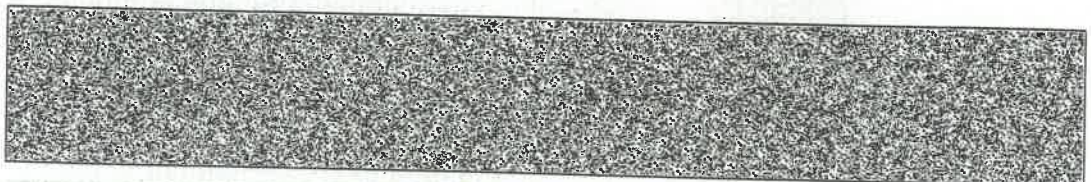
발급사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7년 08월 02일

금천세무서장



제 B0000167 호

손해사정업등록증

상 호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대 표 자 유상헌

주민등록번호 630426-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806, 807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영 위 종 목 1종 3종대인 2종대물 4종

인 격 법인
최초등록일자 2004년 8월 18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7월 26



금융감독원





제 3 - 2 - 859 호

제3종 여권 손해사정인등록증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현대아파트 16동 107호

성 명 유 상 인

주민등록번호 630426 - 1047315

위 사람은 손해사정인 관리규정시행세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19 97 년 4 월 16 일

보 험 감 독 원 장



충청대물보상, 북청주대물센터/잠습숙/d369e525

* 팩스번호 = 유상헌 대표님 (홍수대)

①

홍수대

- 민원인정보

주민등록번호	2018Z2V93	민원인성명	김우겸
주요연락처		이메일	wkim0305@naver.com
성별		연령(만)	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010 - 87709338
직업		지역	기타
주소	287 - 96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24,812-1103		
처리결과희사항법	인터넷		
등록일자	2018-05-11	접수일	20180514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방법	인터넷(타기관)

당해 민원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소보운영파트/박수현/23020430

민원내용	수리업체의 과대수리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민원채록	수리업체의 과대수리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해하여부 및 사유	수리업체의 과대수리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금융회사	금융회사명	금융상품종류	금융상품명
	삼신와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손보)	
	자영업	개인경로보험	상품가입일
금융권의	손해보험		
민원유형	보험금 상정의 적정여부		
부정금액	0 원		
민원요지	수리업체의 과대수리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2

충청대물보상, 북청주대물센터/장승묵/0389a525

005-0202/원승민/0389a525

	<p>상기 문건은 충남 공주시에서 레미콘 운반도입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2017년 2월 6일 9시 30분경 세종시 안솔동 원의 데림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위해 운반도입기사인 김영수(당시 72세, 생년 29년)가 펌프카 후미 Hopper에 타설 Chute 위치를 맞추기 위해 경사진 상태에서 약 50cm를 후진하려다가 바닥의 평판으로 인하여 살짝 미끄러져 타설 Chute 같이 펌프카 Hopper 오른쪽 모서리를 띄우면서 도색이 벗겨지고 조형레비 발효음이 쉼을 질측사고를 유발하여, 펌프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낼처리를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낼처리 하였으나 질측사고에 비하여 과도한 수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적정수준 수리의 여부를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피해자가 해당라고 하는 대로 해주었다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어 수리업체에 정식으로 수리관련 적정성의 답변을 요구하는 대응중임사,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회신어 없어 이렇게 파다수리의 적정성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1. 사고경요. [피해자랑 후미 Hopper 전경] [피해자랑 후미 Hopper 측면] [양쪽부위 확대모습] 사고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운반기사 김영수가 펌프카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타설을 위하여 사진과 같이 올라 부어주는 Hopper에 타설 Chute 위치를 맞추기 위하여 약 50cm 후진을 위하여 앞에서 먼저 타설한 자갈기사의 신호를 받고 살짝 기어를 돌려 중간 바닥의 평판으로 인하여 30cm 정도 Hopper 오른쪽 모서리를 띄우게 되면서 펌프카를 조형하는 레비의 발효음을 쉼그려트면 사고였습니다. 2. 사고조치 및 해결된 사고이후 전후를 받고 오후의 현상을 설명하여 자노지중을 파악하던 중 펌프카 기사가 회사에 연락하였더니 오를 입을 무렵 부 영덕장장에 입고한다고 보낼처리를 요청하여 기원되었던 보낼사에 사고원인을 하였습니다 사고현황 파악 당시 현황되었다는 Hopper의 오른쪽 모서리를 사진과 같이 약 10cm 도색이 벗겨진 상태였고, 조형레비 쉼 스프라클은 모두 안들어간 발효음이 약간 쉼이져 있었습니다 당시 펌프카 기사는 약 50cm 정도 떨어진 3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 승라드에서 펌프카를 조형하고 있었으며 민원서 후진을 봐주면 적정차량의 기사가 질측하려고 한 수리를 하자자 후원을 마치고 내리려 하였었으며 일단 작업을 마친 후에 수리업체와도 하원 보낼레비 후 수후에 제가 현황에 갔습니다. 제가 현황에 갔을 때는 작업을 모두에 작업을 종료하는 중이었으며, 작업하는 중은 이상은 없었다고 했었을 때 타설하는 작업이든은 문제가 없었다고 하기에 휘어진 발효음을 해이로 해서 쓰시면 안된다고 할요하자고 의견을 했었는데, 펌프카사가 사정만큼 현황을 하고 나서는 이거는 해미로 보낼 제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미로 걸린 휘어진 발효음을 해미로 내리려는데 처음보다 더 많이 휘어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내원 수리해야 한다고 보낼레비 해달라고 회사 쉼보했다고 하고 작은 견우사건을 저장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를 후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가 2,786만원, 주차료가 557만원으로 총 3,343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전파이 와서 담당자에게 추경중 질측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50cm 정도 후진하며 Hopper에 전후스프레치를 냈다고 Hopper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해자가 그 견속으로 인하여 Hopper가 다 망가지고 타설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교체해달라고 했으며, 사고조사를 위하여 시간을 ...</p>
<p>첨부파일</p>	<p>2018051410512588919339312.txt 펌프카사고민원(이베다임).hwp</p>

민원처리(금융기관) 상세정보			
처리번호	분쟁조정1국 순회보영2팀	담당자	김용상 (02-3145-8915)
제안명	원민원	처리일	
이정명		이정일	
정보이정		정보이정/정보일자	
자율조정대상여부	Y	처리상태	처리중

3

충청대문보상.복합주내물센터/장승욱/0369a525

소보문영파트/박수현/23d2b430

- 소제기내용	
소제기이유	N
사건번호	
당사자명	원고 피고
소제기일/소제기	제기일 소가 원
소제기 주체	
소제기 사유	
소제기 결과(금융회차 기준)	민사조정 본인소송
	1심 2심 3심

처리결과 입력	요청일자	2018-05-15
	제출기한	2018-06-04
	요청분류	자율조정 또는 사실조회
	요청내용	<p>1.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 000과 관련하여 자율 조정을 의뢰하니, 자율조정 대상인 경우에는 자율 조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 후 자율조정 결과 등 관련서류를 34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등 건이 자율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자율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위 기한 내에 불임과 같이 사실조회 결과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등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 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명시한 사유서를 등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3. 아울러 본 민원제출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민원서류의 내용을 본건 처리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처리결과	정부파일	

19

충청남도보령시/충청남도보령센터/장승목/d369a525

충청남도보령시/충청남도보령센터/장승목/d369a525

2018051410512588919339312.txt

상기 본인은 충남 공주시에서 레미콘 운반도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2017년 2월 6일 9시 30분경 세
종시 (충청남도)의 대림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다설을 위해 운반도급 기사인 김형수(당시 72세,
경북(경북)가 펌프카 후미 Hopper에 다설 Chute 위치를 맞추기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약 50cm를 추진
하였다가 바닥의 반쯤으로 인하여 살짝 미끄러져 다설 Chute 끝이 펌프카 Hopper 오른쪽 모서리를 비
껴가면서 도색이 벗겨지고 조절레버 방호덮이 위한 정속사고를 유발하여, 펌프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펌프카의 안전장치에 손괴를 입은 점과 피해자가 해당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펌프카의 안전장치에 손괴를 입은 점과 피해자가 해당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펌프카의 안전장치에 손괴를 입은 점과 피해자가 해당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
합니다.

1. 사고개요

[피해자측 후미 Hopper 견정] [피해자측 후미 Hopper 측면]
[견착부위 확대도습]

사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반기사 김형수가 펌프카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설을 위하여 사정
과 같이 돌아 부어주는 Hopper에 다설 Chute 위치를 맞추기 위하여 약 50cm 추진을 위하여 앞에서 언
제 터널한 차량기사의 신호를 받고 살짝 기어를 넣는 순간 바닥의 반쯤으로 인하여 30cm 정도 Hopper
오른쪽 모서리를 벗겨가며 펌프카를 조정하는 레미콘 방호덮이를 제그러뜨린 사고였습니다.

2. 사고조치 및 문제점
사고이후 연락을 받고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차손지출을 파악하던 중 펌프카 기사가 회사에 연락하
였으나 오늘 일일 파견 후 정비공원에 입고한다고 보형검토를 요청하여 가압되었던 보험사에 사고경
위를 하였습니다.

사고현황 파악 당시 견착되었다는 Hopper의 오른쪽 모서리는 사진과 같이 약 10cm 도색이 벗겨진 상태
였고, 조절레버 위 스티리움드브로 만들어진 방호덮이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펌프카 기사는 약 50cm 정도 떨어진 3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 승강장에서 펌프카를 조정하고 있었
고, 밑에서 추진을 보주던 작업자랑의 기사가 정지하려고 큰 소리를 외치자 다설을 마치고 내려와 쪽
인하였으며, 일단 작업을 마친 후에 수리하겠다고 하여 보형검토 후 오후에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작업을 오후에 작업을 종료하는 중이었으며, 작업하는 중 큰 이상은 없었나
고 물었을 때 다설하는 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기에 견착된 방호덮이를 해머로 펄서 쓰시면 안되나
고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펌프기사가 사정하달 연락을 하고 나서는 이거는 해머로 펄서 재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머를 손질 되어진 방호덮이를 해머로 내리쳤는데 처음보다 더 많이 휘어져버렸습니
다. 그러더니 내일 수리해야 한다고 보형검토 해달라고 해서 검토했다고 하고 빠른 견착사진을 저장하
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를 후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가 2,700만원, 유자료가 557만원으로 총 3,343만원의 견적이 나
왔다고 연락이 와서 담당자에게 견정중 견착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50cm 정도 추진하여 Hopper에 견착
스프레이를 냈다고 Hopper 견정중 교체하는 것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의를 제기했으나, 피해자가 그
견착으로 인하여 Hopper가 다 멀거지고 다설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교체해달라고 했으며, 사고
조사를 위하여 시간을 끌어와야 유자료를 엄청나게 더 나와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서 해주었다
고 합니다.

이후 수리업체인 천해바다원에 견착사고에 기인한 펌프카 일부의 교체수리에 대한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하여 소견서를 요청하는 내용통영(2017.05.19. 제3330101004006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제차 소견서 회신이 없을 경우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회고장(2017.10.12. 제
3330101004226호)을 발송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불과 저는 사고유발에 따른 보험경신시 보험금 인상이 과도하게 발생되었고 그 책임을 기사에게 묻지
못하면서 제가 모두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을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조사서에 보면 우리 차량이 안전운전분야별로 논점에 미끄러지면서 작업중이던 펌프카의
후미를 충돌하여 Hopper 견정중 파손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을 위한 차량의 바퀴가 함 바퀴도 안
돌려진 상태에서 바닥의 반쯤에 의해 20cm 정도 미끄러진 것이 펌프카의 Hopper 견정중 파손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왜 안전운전분야별로 논점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견착된 부분이 Hopper 오른쪽 모서리에 10cm 도색만 벗겨지고 레미
콘 방호덮이 휘어져 있었다고 하니 펌프카 기사가 해머로 쳐서 더 많이 휘었는데 이를 원인으로 Hopper
ASS-Y를 교체하는 것이 정말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opper는 본 견착부위와 다른 부위에 심하게 제그러지고 파손된 부
분이 많았는데, 이를 본 인한 영향은 없었던 것인지? 왜 그때는 교체하지 않고 있다가 좀미한 견착 스
프레이 하나로 모든 원인이라 하든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수리업체의 경우 보험사고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사고원인과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그 필요성
1 페이지

(5)

충청대물보상.국경주대물센터/장승숙/d369a525

충청대물보상.국경주대물센터/장승숙/d369a525

2018051410512588919339312.txt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해서 해주었다고 하며, 그에 대한 수리사유 및 정당성에 대한 내용중영 및 최고장 요청에도 회신이 없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갑질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건설경기의 하락 및 레미콘 단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 기사들은 하루 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경미한 사고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약점을 잡아 과도한 교체수리(레미콘차량의 70%)를 하는 것은 레미콘 믹서트럭 차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정보다 이 발언으로 더 전문가이시니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수리업체가 수익을 위한 보험 사고의 과도한 수리를 부추기기 보다는 적정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 해주시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추산 : 다음은 어해 당사자들입니다.
- 1. 가해자 : 충북14고7578 (민원인 소유)
- 2. 피해자 : 대전15다6841(장원필프카 소유)
- 3. 수리자 : 부여메다원(대표 진병참) 충북 진천소재
- 4. 손해사정사 : 리카온화재상사자동차손해사정(주) 유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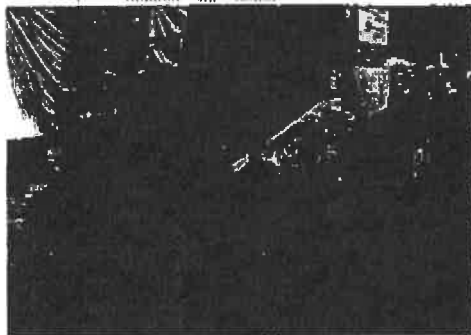
(6)

충청대물보상, 북청수대물센터/장승옥/d369a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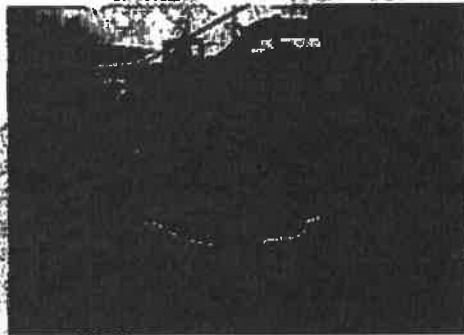
충청대물보상, 북청수대물센터/장승옥/d369a525

상기 본인은 충남 공주시에서 레미콘 운반도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2017년 2월 6일 9시 30분경 세종시 한솔동 임의 대림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위해 운반도급 기사인 김영수(당시 72세, 경력 29년)가 펌프카 후미 Hopper에 타설 Chute 위치를 맞추기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약 50cm를 후진하려다가 바닥의 빙판으로 인하여 살짝 미끄러져 타설 Chute 끝이 펌프카 Hopper 오른쪽 모서리를 비껴가면서 도색이 벗겨지고 조정레버 방호울이 휘는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펌프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처리 하였으나 접촉사고에 비하여 과도한 수리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적정수준 수리의 여부를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피해자가 해당라고 하는 대로 해주었다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어 수리업체에 정식으로 수리관련 적정성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중면서,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이렇게 과다수리의 적정성 해결을 위한 만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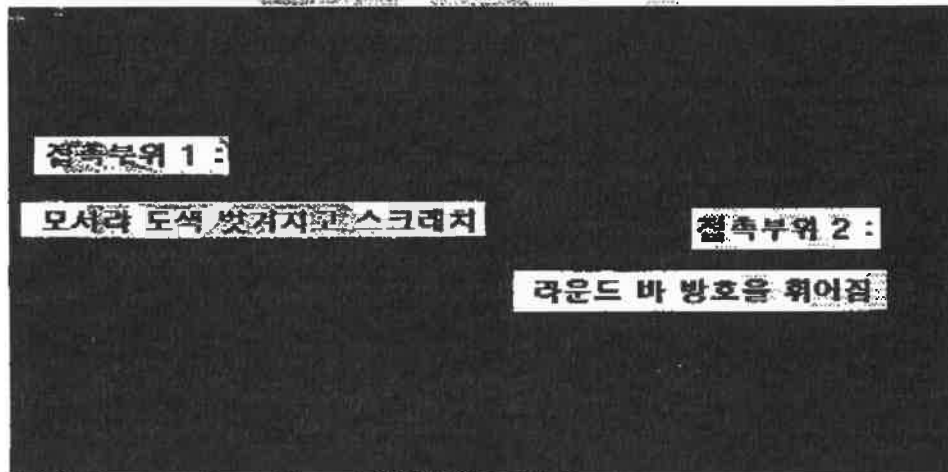
1. 사고개요



[피해차량 후미 Hopper 전경]



[피해차량 후미 Hopper 측면]



[접촉부위 확대모습]

사고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운반기사 김영수가 펌프카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타설을 위하여 사진과 같이 쏟아 부어주는 Hopper에 타설 Chute 위치를 맞추기 위하여 약 50cm 후진을 위하여 앞에서 먼저 타설한 차량기사의 신호를 받고 살짝 기어를 넣는 순간 바닥의 빙판으로 인하여 30cm 정도 Hopper 오른쪽 모서리를 비껴가며 펌프카를 조정하는 레바의 방호울을 찌그러뜨린 사고였습니다.

7

2018년 5월 16일 / 금요일 17:35

송정대문보신, 복원주내물센터/장승욱/d369a525

2. 사고조치 및 문제점

사고이후 연락을 받고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파악하던 중 펌프카 기사가 회사에 연락하였더니 오늘 일을 마친 후 정비공장에 입고한다고 보험접보를 요청하여 가입되었던 보험사에 사고정보를 하였습니다.

사고현황 파악 당시 접촉되었다는 Hopper의 오른쪽 모서리는 사진과 같이 약 10cm 토색이 벗겨진 상태였고 조차레버 위 스티라온드바로 만들어진 방호음이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펌프카 기사는 약50cm 정도 떨어진 3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 슬라브에서 펌프카를 조정하고 있었고, 밑에서 후진을 봐주던 직전차방의 기사가 정지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타설을 마치고 내려와 확인하였으며, 일단 작업을 마친 후에 수리하겠다고 하여 보험정보 후 오후에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작업을 오후에 작업을 종료하는 중이었는데, 작업하는 중 큰 이상은 없었고 물렸을 때 타설하는 작업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에 휘어진 방호음을 해머로 찍어서 쓰시면 안되냐고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펌프기사가 사정없이 연락을 하고 나서는 어거는 해머로 찍질 아니냐고 하면서 해머로 조금 휘어진 방호음을 해머로 내리쳤는데 처음보다 더 많이 휘어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나일 수리해야 한다고 보험정보 해당라고 해서 정보했다고 하고 찍은 접촉사진을 전장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를 후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가 2,786만원, 후차료가 557만원으로 총 3,343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담당자에게 후정중 접촉사고가 남 것도 아니고 50cm 정도 후진하며 Hopper에 접촉스크래시를 냈다고 Hopper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해사건 크 정도에 의해서 Hopper가 다 망가지고 타설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정해달라고 했으며, 사고조사를 위하여 시간을 끌어봐야 후차로만 엄청나게 더 나와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리업체인 (주)에비다이에 접촉사고에 관련된 펌프카 일부의 교체수리에 대한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하여 조견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2017.05.18. 제3330101004096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전자 소견서 회신이 없을 경우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최고장(2017.10.12. 제3330101004226호)을 발송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고유발에 따른 보험갱신시 보험금 인상이 과도하게 발생되었고 그 책임을 기사에게 묻지도 못하면서 제가 모두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있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문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조사서에 보면 우리 차량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작업중이던 펌프카의 후마들 충돌하여 Hopper 전체를 파손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후진을 위한 차량의 바퀴가 한 바퀴도 안 굴러간 상태에서 바다의 빙판에 의해 20cm 정도 미끄러진 것이 펌프카의 Hopper 전체를 파손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8

충청대농도상.북청주대물센터/장승목/4369a525

소보운영파트/박수현/42a9435d

둘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접촉된 부분이 Hopper 오른쪽 모서리에 10cm 도색만 벗겨지고 레바 방호율이 휘어져 있었다고 하나 펌프카 기사가 해머로 쳐서 더 많이 휘었는데도 이를 원인으로 Hopper ASS'Y를 교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opper는 본 접촉부위와 다른 부위에 심하게 찌그러지고 파손된 부분이 많았는데, 이틀로 인한 영향은 없었던 것인지? 왜 그때는 교체하지 않고 있다가 경미한 접촉 스크래치 하나로 모든 원인이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수리업체의 경우 보험사고의 수리범위에 대하여 사고원인과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해서 해주었다고 하며, 그에 대한 수리사유 및 정당성에 대한 내용증명 및 최모장 요청에도 회신이 없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갑질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건설경기의 하락 및 레미콘 단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 기사들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약점을 잡아 과도한 교체수리(레미콘차량의 30%)를 하는 것은 레미콘 믹서트럭 차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보다 이 방면으로 더 전문가여시던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수리업체가 수익을 위한 보험사고의 과도한 수리를 부추겨왔다는 죄정상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알발백해 해주셔서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수신 : 다음은 이에 당사자들입니다

- 1. 기해자 : 충북14고7588 (민원인 소유)
- 2. 피해자 : 대전15다6844(정일펌프카 소유)
- 3. 수리장 : ㈜에비디엠(대표:김영찬) 충북 진천소재
- 4. 손해사정사 : 리카온화재상장자동차손해사정(주) 유상현

총괄요약문

사정서 일련부호 2017-00099-01호 (위임일자 : 2017.02.07)
손해사정 대상 [콘크리트펌프카52M] 대물배상 손해사정

1. 이해 당사자

1.1. 신청인

상호/소속	삼성화재/청주대물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2-81-45617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삼성화재 빌딩		

1.2. 피신청인

상호/성명	장원펌프카/홍진호	주민등록번호	305-23-45691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503-1(유천동)		

2. 신청인의 배상책임

신청인 사고접수번호 20170207-01585호 약관상 부책 [피보험자 배상책임 발생]

3. 결정 손해액

피해물명	청구금액	결정손해액	비고(지급처)
콘크리트펌프카 수리비	27,860,800	18,300,000	(주)에버다임
휴차료	5,570,040	5,570,040	홍진호
계	33,430,840	23,870,040	

주1) 위 결정금액中 수리비는 (주)에버다임에, 휴차료는 피신청인(홍진호)에게 지급함.

4. 지급처

상호 / 성명	주민·사업자번호	은행/예금주	계좌번호
(주)에버다임	107-81-45758	농협/(주)에버다임	211039-51-070166
장원펌프카/홍진호	305-23-45691	하나은행/홍진호	630-008300-415
※ 보험회사는 본 사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해당사자가 본 사정서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함.

금융감독원 손사 제B-167호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최 장 훈**

목 차

<손해사정전문>

1. 기초사실 -----	4
1.1 보험계약내용 -----	4
1.2 사고발생 개요 -----	4
2.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와 범위 -----	4
2.1 배상책임 존부 -----	4
2.2 보험약관상 면,부책 검토 -----	4
2.3 과실비율 -----	5
3. 손해액 산정 -----	5
3.1 일반사항 -----	5
3.2 산출근거 -----	6
3.3 피해물 확인사항 -----	7 ~ 14
3.4 손해심사 결정 세부내역 -----	15~ 16
4. 수수료 청구 -----	16
5. 종합의견 -----	17

손해심사내용

1. 기초사실

1.1. 보험계약내용

차량번호	-	피보험자	-
계약번호	-	보험기간	2016.04.29 - 2017.04.29
보상한도	2억원	유효기간	상동
보험종목	영업용	특약사항	-

1.2. 사고발생 개요

사고일시	2017. 02. 06 (10:00)	사고장소	세종시 한솔동 임의 대림아파트
사고내용	피보험차량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아파트건설현장내에서 작업중이던 콘크리트펌프카의 후미를 충돌하여 HOPPER ASS'Y S-V/V, WEAR PLATE 등을 파손시킨 사고이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와 범위

2.1. 배상책임 존부

피보험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위반,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이며,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보험자인 신청인의 배상책임 또한 발생하는 사고이다.

2.2. 보험약관상 면,부책 검토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보상범위(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금번 사고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에 기인한 사고로서 대물 "부책" 사고임.

2.3. 과실비율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의 사고조사내용에 근거하여 검토한 바 피보험차량이 작업 중이던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서 사고조사자가 결정한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신청인차량 과실 100%, 피신청인차량 과실 0%를 확정하였다.

[신청인 과실 : 100 %, 피신청인 과실 : 0 %]

3. 손해액 산정

3.1 일반사항

3.1.1 본 건 사고는 2017년 02월 06일(10:00)경 피보험차량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아파트건설현장내에서 작업중이던 콘크리트펌프카의 후미를 충돌하여 HOPPER ASS'Y 등을 파손시킨 사고이다. 피해물은 장원펌프카 홍승호로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차량임을 확인하였고 펌프카 10대를 소유하고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1.2 피해물은 (주)에버다임에서 제작한 콘크리트펌프카 HCP52.18(52M) 모델이며 2007년 08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출고당시 상품가격은 4억원이고 중고거래가격은 약 1억 7천만원 정도로 확인되었으며(에버다임 본사 TEL1588-0758) 선견적은 (주)에버다임에서 금27,860,800원이 제출된 상태로서 피신청인은 간접손해를 포함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3.1.3 파손된 콘크리트펌프카를 현장 입회하여 확인한 바 후면 호퍼 부분을 충돌하여 밀리면서 HOPPER ASSY"Y, CYLINDER:DELIVERY, GRID, S-VALVE, WEAR RING, WEAR PLATE, INTER RING, BEARUNG CASE, SHAFT BEARUNG, AGITATOR CON.V/V 등이 파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3.1.4 본 건의 경우 (주)에버다임에서 제작하여 출고한 차량으로 수리업체측에서 차량수리비 지불보증이 되지않으면 수리불가하다고 하여 수리지연시 휴차료 증가가 예상되는바 신청인 조사자와 협의하여 지불보증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고 수리업체에 신속한 수리작업 완료를 요청하였다.

3.2 산출근거

- 3.2.1 파손된 콘크리트펌프카의 중고시세가격은 약 1억칠천만원으로 수리가 가능하여 (주)에버다임에서 수리진행 하였으며 피해물 입회를 통해 사전에 수리 가능한 CYLINDER:DELAVERY 부품은 교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최종 수리 업체 엔지니어 의견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 하였다.
- 3.2.2 피보험차량이 펌프카 후미를 추돌하면서 HOPPER ASS'Y 등은 직접적인 충격으로 파손되었으며 CYLINDER:DELIVERY, GRID, S-VALVE, WEAR RING, WEAR PLATE, INTER RING, BEARUNG CASE, SHAFT BEARUNG, AGITATOR CON.V/V 부품은 간접적인 충격으로 파손되어 교환하였다.
- 3.2.3 견적서에 청구된 부품은 (주)에버다임에서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부품금액을 확인하고 부품가격은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으며, CYLINDER:DLIVERY는 교환하지 않고 교정하는 것으로 하여 작업하였고, 기타소모품은 3/2 인정하였다. 나머지 부품은 신제품으로 교환한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 3.2.4 공임은 (주)에버다임에서 독자적인 수리비용으로 전혀 DC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탈/부착, 교정 비용으로 (4일*3.5명*3만원)= 336만원을 산정하였고 시간당 공임은 신청인회사와 수리업체간 未계약으로 확인되어 건설기계정비업체의 통상의 요금인 M/H 3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 3.2.5 본 건의 수리 以後 남은 잔존물(HOPPER ASS'Y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측에서 인수 의사가 없어 잔존물 평가액은 지급보험금에서 일부 공제하고 지급하였고 세부 손해사정 내역은 3.4항에 상세히 기재하였다.

3.3 피해물 확인사항



THE CLAIM ADJUSTMENT REPORT



THE CLAIM ADJUSTMENT REPORT



THE CLAIM ADJUSTMENT REPORT




THE CLAIM ADJUSTMENT REPORT



THE CLAIM ADJUSTMENT REPORT



THE CLAIM ADJUSTMENT REPORT



*부품 교환 확인



*수리 완료 확인

THE CLAIM ADJUSTMENT REPORT

3.4 손해심사 결정 세부내역 (별첨 견적서 참조)

3.4.1 콘크리트펌프카52M 손해사정 내역

(단위: 원)

품목	단위 규격	수량	단가	청구액(A)	결정손해액(B)	차액(B-A)	비고
HOPPER ASS'Y		1	7,400,000	7,400,000	7,400,000		
CYLINDER:DELIVERY		2	2,700,000	5,400,000	300,000		교정 인정
GRID		1	420,000	420,000	420,000		
END SHAFT		2	94,000	188,000	188,000		
S-V/V		1	1,560,000	1,560,000	1,560,000		
WEAR RING		1	480,000	480,000	480,000		
WEAR PLATE		1	1,450,000	1,450,000	1,450,000		
INTER RING		1	620,000	620,000	620,000		
MIX SHAFT CENTER		1	160,000	160,000	160,000		
BEARING CASE		1	450,000	450,000	450,000		
SHAFT BEARING		1	350,000	350,000	350,000		
BEARING CASE SEAL		1	50,000	50,000	50,000		
AGITATOR CON.V/V		1	800,000	800,000	800,000		
기타 소모품		1	1,500,000	1,500,000	1,000,000		3/2인정
공임				4,500,000	3,360,000		4일*3.5명 *3만원
소계				25,328,000	18,588,000		
부품				20,828,000	15,228,000		
공임				4,500,000	3,360,000		
누계				25,328,000	18,588,000		
부가세	%	10		2,532,800	-		불인정
휴차료	일	4	1,392,510	5,570,040	5,570,040		
잔존물 공제				0	-288,000		
최종결정금액				33,430,840	23,870,040		

주 1) 수리공임은 건설기계 통상의 공임기준 M/H 30,000원으로 산정함.

3) 잔존물 공제는 수리업체에서 -288,000원을 공제함.

3.4.2 간접손해 지급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간접손해(휴차료) 지급기준은 "비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또는 건설기계)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콘크리트펌프카 차량 52M 휴차료 지급기준인 1일 ₩1,392,510원을 수리기간동안 인정하였다.

○ 수리기간: 2017년 2/7 ~ 2/10일 (4일간 인정)

⇒ ₩1,392,510 × 4일 = 5,570,040원

3.4.3 잔존물 공제

본 건 수리以後 남은 잔존물에 대하여는 수리업체 (주)에버다임 지급보험금에서 최종 **금288,000원**을 공제하였다.

4. 손해사정 수수료 청구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수임료	*사정금액: ₩23,870,040원 × 4.18% 수임료 최저한도 1,012,000원	1,012,000
경 비	1. 일비: 30,000 × 1회 = 30,000원 2. 교통비: 서울↔진천 (자가용 이용) (210km/8 × 1,517원) × 1회 = 39,820원 3. 통행료: 10,400원	79,000
합 계	*백원 단위 절사함	1,091,000
지급처	*예 금 주: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사업번호: 106-86-30223 *입금은행: 우리은행(016-285800-13-101)	

5. 종합 의견

신청인은 (주)에버다임에 금18,300,000원을, 피신청인 장원펌프카 홍승호에게 금5,570,040원 합계 금23,870,04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며 잔존물은 금288,000원을 공제하였다.

본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 및 동법 제188~189조에 의거하여 민법 제750조, 자동차보험약관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통상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다.

단,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어느 일방의 소제기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 02. 13

조 사 자 : < 손해사정사 > 유 상 현 (인)

심사결정 : < 손해사정사 > 유 상 현 (인)